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7일

발의자 : 이용진, 경수현, 정병기, 정기혁,
소형준, 김경이, 양순임, 고영욱,
정윤주, 이관우, 김육영

1. 제안이유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의 혜택 기준을 완화하여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로 나이 제한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 나.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5조)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4조제4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0조제3호)
- 라.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 라. 입법예고 : 2023. 11. 7. ~ 2023. 11.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u>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u> 가정을 말한다.</p> <p>제14조(회의 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u>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6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지원)</p> <p>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p>	<p>제2조(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u> ----- --.</p> <p>제14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요청할</u> -----.</p> <p>제15조(수당 등) <u>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16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지원)</p> <p>① ----- ----- -----</p>

<p>간추진단을 구성 및 <u>운영</u>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0조(성북구 출산장려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 사업을 실시한다.</p> <p>1. 2. (생략)</p> <p>3. <u>다자녀 가정</u>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p> <p>4. 5. (생략)</p> <p><u><신설></u></p> <p>제28조 (생략)</p>	<p>----- <u>운영할</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성북구 출산장려사업) --</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다자녀가정</u>-----</p> <p>-----</p> <p>4. 5. (현행과 같음)</p> <p>제28조(포상) <u>구청장은 지역사회</u> <u>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u> <u>기 좋은 환경 조성</u>에 이바지한 <u>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u> <u>「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u> <u>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p>제2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p>
---	--